

제7장
무역구제

제1절
적용범위

제7.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따라 취해지는 조사 및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상,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의 경우, 무역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경제부 또는 그 승계기관

제2절
반덤핑 및 상계 조치

제7.2조
일반규정

1. 양 당사국은 1994년 GATT 제6조 및 제16조,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양국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
2. 양 당사국은 1994년 GATT 제6조,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합치되게 조치를 적용할 권리와, 투명성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3. 이 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사의 개시와 수행 그리고 반덤핑 및/또는 상계 조치의 적용을 포함하여, 반덤핑 및 상계 조치에 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4.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최종판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확정 조치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의 근거를 형성하는 고려 중인 모든 필수적인 사실의 공개를 보장한다. 이는 반덤핑 협정 제6.5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2.4조를 저해하지 않는다. 공개는 서면으로 하고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제7.3조 통보 및 협의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개시를 위하여 국내 산업에 의한 또는 국내 산업을 대신하는 서면 신청을 접수할 때, 수령 당사국은 그러한 조사의 개시에 앞서 가능한 한 사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그 신청을 통보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대한 상계 조사를 위한 신청을 접수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신청의 접수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고, 그 신청에 언급된 사안에 관한 상황을 명확히 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을 초청한다.
3. 이해당사자는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 동안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를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4. 자국의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부과된 반덤핑 또는 상계 조치의 대상이 되는 당사국은 양국 간 무역에 대한 이러한 조치의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할 권리 to 갖는다.

제7.4조 최소부과 원칙

당사국이 잠정 관세나 확정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러한 관세의 세액은 덤플 마진 또는 상계 가능 보조금 액수를 초과하지 않으나,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마진 미만의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할 경우, 관세는 그 마진 미만이 될 수 있다.

제7.5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어떠한 당사국도 이 절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 협정의 제15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3절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제7.6조 정의

이 절의 목적상,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제7.7조에 기술된 것으로서 과도기간 내에 적용하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국내 산업이란 수입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활동하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총생산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잠정조치란 제7.10조에 기술된 잠정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나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각 당사국의 양 허표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완료일부터 5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7.7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심각한 피해의 우려를 초래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음으로 구성된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 가. 이 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 정지, 또는
- 나. 다음 중 더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인상
 - 1)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진 날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제7.8조

통보 및 협의

1. 한쪽 당사국은 다음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한다.
 - 가. 제7.9조에 기술된 조사의 개시
 - 나. 이 협정에 따른 상품에 대한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증가된 수입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에 대한 조사 결과의 도출, 그리고
 - 다. 잠정 또는 최종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하는 결정
 2. 한쪽 당사국은 조사로부터 얻는 비밀이 아닌 형태의 정보를 검토하고 그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에 앞서 실행 가능한 한 사전에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
- ### 제7.9조 조건 및 제한
1.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에 따라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그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 및 제4조제2항나호의 요건을 준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 및 제4조제2항나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모든 조사를 그 개시일부터 1년 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한도와 기간을 제외하고,
- 나.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기간이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 절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또는
- 다. 다른 쪽 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도기간의 만료 후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5. 이전에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대상이었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그 이전의 조치가 적용되었던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에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재적용하지 않는다.

6.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 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7. 당사국이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때, 관세율은 그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제7.10조
잠정조치

1.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를 초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적용 당사국은 잠정적으로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를 개시한 날 후 최소한 45일까지는 잠정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3.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그 기간 동안 그 당사국은 제7.9조제1항 및 제7.9조제2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4. 그 당사국은 제7.9조에 기술된 조사에서 제7.7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않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을 신속하게 반환한다.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7.9조제4항나호에 기술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7.11조 보상

1. 당사국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자국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한다. 적용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2. 양 당사국이 협의 개시 후 30일 내에 보상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에만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3. 자국의 상품에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당사국은 제2항에 따라 양허를 정

지하기 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 한다.

4.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수입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적용되어 왔고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한, 제2항에 언급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한 최초 24개월 간 행사되지 않는다.

5.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적용 당사국의 의무와 제2항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권리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하는 날에 소멸된다.

제4절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제7.12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9조를 포함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협정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행해진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하거나 어떠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제3절에서 적용되는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

3.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결과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른 특혜 마진은 유지된다.

4.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 당사국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려는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의 잠정 결과 및 최종 결과를 포함한, 그 조사의 개시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의 서면 통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즉시 제공하고, 협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5. 이 조의 목적상, 절대적 양 또는 가액 기준으로 측정하여 당사국이 최근 3년의 기간 동안 조사 중인 상품의 상위 5대 공급자 중 하나인 경우, 그 당사국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여겨진다.

제7.13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어떠한 당사국도 이 절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의 제15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5절 무역구제에 대한 협력

제7.14조 무역구제에 대한 협력

양 당사국은 무역구제 사안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각 당사국의 관련 당국 간 무역구제에 대한 협력을 장려하도록 노력한다.